

사람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 필연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고 기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부분은 묵시적 동의 여부와 공익적 내용에서 긴급성과 필연성이라 할 수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묵시적 동의와 긴급성 및 필연성에 대해 관대한 해석을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필연성과 긴급성은 반드시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해야 할 이유인데, 사실 웬만한 보도 내용은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해도 내용 전달은 된다. 다만 현실감과 박진감이 떨어질 뿐이다. 현실감과 박진감은 공익성과 관계되기보다 상업성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상업적 욕구를 절제하면 충분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 IV. 맺는 말

언론분쟁은 산업적 속성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자들의 행위 차원에서 비롯되며, 노력을 통해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기자들의 자각과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핵심을 취재관행의 문제로 돌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론분쟁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안이며, 주로 사건사고, 탐사보도, 폭로성 고발기사 등에 집중된다. 이 분야의 기사가 주로 공격저널리즘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데, 기자들은 연조가 비교적 낮은 기자로 취재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이다. 인력배치에서부터 언론분쟁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허위 사실의 보도는 취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일방향으로 사물을 재단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보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면 상당성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저하게 취약하다.

셋째, 상당수 언론분쟁이 제목을 비롯한 기사 본문 중의 과장된 표현 때문에 비롯된

다. 이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타인의 글이나 말을 인용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언론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자 재교육을 통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약간의 기자 재교육과 기자들의 현장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론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언론분쟁이 증가하고 언론사의 취재관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기자 경험으로 보면, 그 원인은 편집국(혹은 보도국)의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언론은 현장기자의 오보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특히 주관적 오보에 대해 관대하다. 객관적 오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관적 오보이다. 객관적 오보는 기자의 실수가 많다. 그러나 주관적 오보는 기자의 나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편이고, 짧은 속보를 많이 쓰는 사건중심보도 편집관행에서 물리적 시간이 많이 드는 전체적 사실의 확인보다는 당장 드러난 사실이라도 정확하게 하자는 전략적 동기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사실 확인 절차에 대해서 당위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는 기자들이 '정확성'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게 유리하다. 즉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된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이 요구하는 사실만 충족되면 이 사실들의 파편적 정확성을 지키는데 주력하는 게 유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들이 인용의 방식이 전체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법의 테두리'를 인식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다. '상당성'에 대한 개념을 취재과정에서 떠올려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익적 내용의 보도에서 시민의 초상을 사용할 때 긴급성과 필연성을 따져보기를 바라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 언론이 사건중심보도 관행을 탈피해 점점 해설과 내러티브 중심으로 기사체를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과 감정 개입의 폭도 이전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기사가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취재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의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취재 및 기사작성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의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기자 개개인이 오보가 속보성 때문이 아니라 행위차원의 부주의와 나태 때문에 생긴다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론윤리강령과 보도준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재과정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편집국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취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사 생산의 스케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조직적 차원의 변화를 통한 취재관행의 혁신이 없으면 언론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중서(1994), 정정보도 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 5집』, 서울: 헌법재판소
- 김창룡(2004),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부산토론회 주제논문집」
- 노광선(1995),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양삼승(2000),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2000.11.23 대전) 자료집.
- 임병국(1990), 신문오보의 실태와 정정, 『오보와 정정』 한국언론연구원, pp. 167-382
- 장호순(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정간법 개정과 언론 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세미나(2003. 08. 28, 속초) 자료집.
- 정걸진(2008),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언론중재위원회 대구토론회 주제논문집」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연차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조정·중재 사건 분석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 Berry, F. C. Jr(1967), A Study Of Accuracy in Local News Stories in Three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Autumn, pp.480-492.
- Gans H. J(1980),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Y.:Vintage Books
- Lawrence G. L & David R. Grey(1964), Subjective Inaccuracies in Local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Winter, pp.753-757.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Y.:Free Press